

종합토론

■ 박현채 (서울제5중재부 중재위원)

제가 중재위원을 1년 남짓 해오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초상권 침해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는가'이 부분은 모든 위원들이 마찬가지로입니다. 배재만 부회장님도 '중재위에서 하는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재형 교수께서 법적인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이고 보편타당성 있는 기준을 제시해주셨다고 봅니다. 미국, 독일, 한국의 판례들을 인용해가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 기준을 익히셔서 거기에 맞도록 해주시는 것이 기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제소 혹은 신청된 사례에는 특이한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도 월드컵 응원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왜 내 사진을 찍었느냐'하는 경우도 있고, 단풍 시즌에 TV에서 헬기를 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헬기에 있는 사람이 가서 '내가 당신 사진을 찍겠소'할 수도 없고, 만약 자기 와이프가 아닌 사람하고 손잡고 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매우 특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언론이 사진을 잘못 찍어 초상권을 침해했다면 물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흉악범들을 많이 찍기도 하고 보도도 많이 합니다. 흉악범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경찰에서 사진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무죄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잡힌 사람이 흉악범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언론에서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여론재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과연 그 사람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법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기자와 성직자는 약자를 보호하고, 인격권에 대해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는 공익적 이익을 위해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사진도 찍고 증거도 찾다 보니 초상권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위원님들께서도 기자들의 탐사보도에 대해서는 고려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과거 불량만두 보도로 인해 사장이 죽었습니다. 사실 사진으로만 보면 불량만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는데, 그냥 불량만두라고 하니까 기자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죄판결이 났을 때 그 사장은 이미 죽었는데 언론사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원과 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 보면 사안이 가벼우면 중재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법원에 가서 소를 제기하고 변호사 선임할 정도면 사건이 중대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액수가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하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손해배상 액수가 정해질 수 있는 점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평균적으로 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된다 하여 그와 똑같이 중재위원회에서도 평균 천만 원 정도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통계수치에 나와 있

는 것처럼 수준 차이가 너무 크다면 손영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철관 회장님께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 사진 같은 것을 보도하느냐 마느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 발표를 하더라도 그게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발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피해자 등에게 확인을 한다든지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 전화를 해 보면 그 회사에서 쉽게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는데 아예 전화도 해보지 않았다면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량만두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익에 관한 보도는 단순히 허위라고 해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라 하더라도 언론기관 입장에서 그런 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언론기관의 책임을 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익명보도원칙에 관해 대법원에서 99년에 아주 중요한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익명으로 보도를 하라, 특히 사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공인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이름을 보도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정숙 (대구중재부 중재위원, 영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초상권의 경우에 면책 기간이 없는지요? 예를 들어 몇 년이 지나면 인용을 해도 괜찮다거나 책에 쓸 때 30년 전 사진 또는 50년 전 6·25 때 아이의 사진을 썼는데 나중에 와서 '그게 자기 사진이다'라고 주장할 때 시간적인 측면에서 면책 기준은 없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또 초상권 손배의 경우, 일면에 실렸는지,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오래 전에 찍었다 하더라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초상권은 여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에도 사자의 인격권이라고 해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죽은 지 60년이 지났다면, 30년이 지났다면 그러면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광고에 쓴다면, 예를 들어 제임스 딘의 사진을 광고에 이용한다면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해서 따로 보호를 받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없고, 지방법원 판결에서 이런 저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기간에 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30년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50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70년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현재는 대체로 기간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경우라면 계속 보호를 받고 사자의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또는 언론에 의한 보도나 광고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될 수 있으면 사진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일면에 있느냐 뒷면에 있느냐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도윤(CJ E&M 법무팀 부장)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 중에 뉴욕에 소재하는 콜롬비아대학교 내에서 촬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캠퍼스 내에 촬영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촬영된 영상에 잡히는 사람들에게 다 허락을 받은 영문품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보고 그 초상을 허락한 품의 수를 다 매칭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허락한 것이 맞느냐, 허락하지 않았으면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콜롬비아

대학교가 유별나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트렌드가 우리나라에도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 **오동명(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진특위위원장)**

대선과 관련해서 특정 후보자의 표정이 안 좋게 나온 사진에 대해 비서관 등이 언론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편집권을 인정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손영준(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나주 성폭행 피의자 고모씨의 경우, 법원에서 재판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흉악범이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초상권이 상당 부분 사인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면 재판은 왜 있는지, 언론이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구조적인 맥락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보과잉의 시대냐, 정보부족의 시대냐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과잉의 시대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정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적인 이익과 관련된 정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알 권리라는 관점에서 초상권이 침해되는 영역을 넓힌다고 했을 때 누가 현실적으로 이익을 보느냐, 이익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자냐, 신청인이나 아니면 언론이나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는 논의는 누가 정하느냐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이런 논의를 누가 정해야 하느냐, 어떤 통치시스템이냐에 관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논란이 되긴 합니다만, 고모씨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부분 소외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어 질문을 드립니다.

■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선 후보에 관한 보도는 어떤 사진을 올려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선후보 정도 되면 그야말로 공적인물 중에서도 공적인물, 대선 후보로 나섰으면 모든 부분에 관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현재 방송이나 신문에서 보도하는 사진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대선 후보에 대한 아주 내밀한 부분,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겠지만 그 이외의 것은 사진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관해 책임지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해서 공정성 시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사가 한 후보는 찡그리는 모습을 하고, 한 후보는 활짝 웃는 모습이었더라도 악의적이거나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공격을 받아서 문제가 될 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주 성폭행 피의자 고모씨의 경우 오보로 판명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사 입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게 아예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게 공인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방어할 수 있기에 모든 증거가 나왔을 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피의자라고 지목된 사람이 나중에 무죄를 받았을 경우에도 비슷한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재판이 왜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재판이 3심까지 가면 현실적으로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중간에 혹시 위증한 사람이 있어서 재심이 들어온다면 또 시간이 지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92년에 형사재판 때 판결 쓴 것이 재심 들어와서 7~8년 후에 보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범죄사건에 관한 보도에서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주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도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어떤 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독자나 시청자, 넓게는 국민의 이

익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알 권리'라는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은 알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독자들이 알아야 되는지, 그로 인해서 공적인 논의를 촉발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정우(한국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 투데이코리아 편집국장)

지명수배를 당했던 사람이 검거가 돼서 실형을 살고 자기의 수배전단이 신문에 나왔던 것을 내려달라고 민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중도에 포기해서 결과를 알 순 없었지만, 만약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됐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 임병렬(서울제4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앞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사삭제청구까지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에 자기 신변에 관한 불이익한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인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대오(오마이스타 국장대우)

제가 몸담고 있는 연예계에서는 과연 연예인이 공인이나, 아니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이나 하는 판단이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제가 언론중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형사와 민사사건으로 연루되었던 사건이 이른바 '장자

연 문건 공개' 건으로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연예인 사건은 아니었지만 전 국회의원이었던 박기동 의원이 술집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하는 동영상을 공개한 건으로 민사 1억하고 형사까지 소를 받았다가 결국 박기동 의원이 소 취하를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박기동 의원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공인이었고, 몰래카메라로 영상이 제작되었다는 점이 있었지만, 제가 몸담고 있던 회사에 자문을 해주시는 변호사가 그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이고 초상권 침해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옳다고 조언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성 보도였다,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반론보도를 제공했다는 것으로 결국 박기동 의원이 소 취하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연예계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파파라치식 취재에 의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연예인의 공적 영역, 사적 영역, 대부분의 연예인 같은 경우는 파파라치식 취재를 당하는 경우가 사건·사고라기 보단 연애를 하는 장면과 같은 형태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적 영역은 연예인이더라도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중재위에 신청된 사건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파파라치식 취재에 의해서 언론중재위에 오는 것은 정용진 신세계 회장 외에는 단 한 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연예인이 자신을 공인이라 여기기 때문에 언론중재위나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파파라치식 취재를 지양할 수 있는 제도든 홍보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예인이 공인이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유명인이냐에 관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2002년 가수 비가 인기 있었을 무렵인데, 대학원 학생들에게 '가수 비는 공인인가?' 하는 질문을 했더니, '공인이 아니다'는 대답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

‘언론·인터넷·인격권’이라는 로스쿨 강의에서 ‘유명가수가 공인인가’하는 질문에서 ‘공인이다’고 답변하는 학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건 아마 언론과 관련된 법에 관해 알려지기도 했고, 대법원 판결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념하고는 맞지 않는 표현방식입니다. 공인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 중에서도 장관이나 국회의원 같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공인이라 하지, 연예인은 옛날에는 그야말로 중인계급이던지, ‘딴따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유명인이라는 표현이 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 뉴욕타임즈 사건에서 공인이 고위직 공무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출발했는데, 그 후 언론의 면책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고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유명인으로 넓혀가면서 공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미국법 이론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공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도 공인의 기준에 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공인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미국에서도 유명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공인인지 유명인인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것에 따라서 결론이 크게 차이가 있진 않을 것입니다.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관해 알아야 될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 보도하는 것에 대해 똑같이 언론사가 면책되는 범위가 일반 사인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파파라치는 유명인이나 공인인 경우에만 따라다니지, 일반인을 따라다니며 취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면책 범위가 넓겠지만, 취재방법이 문제가 있다든지, 미행을 했다면 책임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호텔에 낫선 남자와 들어가는 모습 등은 쉽게 보도를 해서는 안 될 내용이라고 생각되지만,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든지 레스토랑 정도 들어가는 것을 보도했다고 책임을 추궁 당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적인 영역이라도, 일반인의 사적인 영역이라면 그 자체로 보호가 되고 동의 없이는 보도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내보내서는 안 되겠지만 유명인이라면 그 범위가 그 보다는 넓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배재만 (한국사진기자협회 부회장, 연합뉴스 사진부 차장)

초상권 침해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준을 정하자고 한 것은 개별 사건에서의 분위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할 때 일반적인 기준은 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초상권 뒷모습 같은 경우, '윤곽이 나왔을 때 옆에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 경우' 같은 조건이 있듯이 중재위원들 다섯 분 중에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하긴 뭐하다'라는 식의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흉악범 이야기가 나와서 여쭙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신문의 자료사진을 DB화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신문들도 다 볼 수가 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독일에서 20년 후에 출소 시에 보도해서는 안된다'라는 부분을 연관 지어 말씀드리면, 누군가 자신의 죄에 맞게 20~30년 형을 살다 나와서 지금 와서 20~30년 전의 신문을 네이버에서 보고 그 신문에 난 내 사진을 지워 달라 했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2009년 개정된 조항에 따르면 보도된 지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고, 인지한 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받아들여진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대해서 초상권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중재위원회 측 물었더니 그것은 언론중재위의 소관사항이 아니라 법원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법원으로 가게 되면 판결은 어떤 식으로 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초상권 저촉을 받지 않으려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세미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찾아보니까 명시적 동의, 묵시적 동의, 추정적 동의가 있었습니다. 명시적 동의는 문서나 구두로 촬영을 승낙하는 경우고, 묵시적 동의는 명시적으로 승낙하지 않더라도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호의적인 미소를 지으면서 질문에 답하거나 촬영에 협조한 경우, 크리스마스 저녁에 애인과 팔짱을 끼고 명동대로를 확보하다가 뉴스카메라에 촬영되었거나 공원에서 애인과 데이트하다 찍힌 경우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추정적 동의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재중이거나

본인에게 의식이 없어서 필요할 때에 승낙을 받을 수 없었지만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승낙이 확실히 기대되는 경우였고, 보다 구체적으로 추정적 동의라는 것은 플로리다 퍼블리싱 회사 대 플레처(Florida Publishing Co. v. Fletcher) 사건에서 '사진기자가 소방관의 뒤를 따라 화재로 파괴된 주택에 들어가 촬영한 경우, 법원은 뉴스매체에 관례에 근거한 추정적 승낙을 인정해서 기자의 책임을 부인함'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언론중재위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쭙보고 한편으로는 건의하고 싶습니다.

■ 오광진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언론중재위원회는 손해배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손해배상액 산정표'와 '손해배상액 산정가감표'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중재위원 워크숍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중재부간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배재만 부회장님께서 신청인이 위원회 측에 손해배상액을 문의했었다는 말씀씀을 하셨는데, 위원회 상담팀은 법무 업무에 능통한 전문 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원 판례, 언론중재위의 사례 등을 토대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가 '100만원 신청해라, 200만원 신청해라' 식으로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해주는 경우는 없으며, 다만 상담자가 잘 모르니까 유사 사례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법원 판례 혹은 언중위의 사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합니다.

또, 손해배상의 일관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중재위는 현직 부장판사, 전직 언론인 등 법조인과 언론인들이 한 중재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면서도 언론사의 입장을 반영한 합의 방안을 제시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증거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들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위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20년 지난 과거 사진을 올리는 것은 새로운 문제로 앞으로 연구를 해야 할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동의와 관련해서는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묵시적 동의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TV 카메라에 친근하게 웃는 경우, 동의했다고 하진 않았지만 그 행동에서 동의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비행기에서 여배우가 내리면서 슬쩍 포즈를 취하면서 솔을 벗었는데 너무 많이 벗은 모습이 실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관해서도 동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시적 동의나 묵시적 동의가 아니더라도 여러 상황을 봐서 '동의를 했을 것이다'라고 인정되면 추정적 동의가 인정됩니다.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 한박무 (대전중재부 중재위원)

사회적 문제를 촉발시키거나 공분을 일으킨 흉악범이 누군지 알고 싶어 하는 건 국민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알려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언론이 국민을 짓누르는 권력기관을 자처하던 시절에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있었으나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마구 피의사실을 공표했지만 누구 하나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사회참여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더 법이 만들어 놓은 권리를 향유하겠다는 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초상권 침해다, 명예훼손이다'라는 문제가 차차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기자들이 초상권 문제 때문에 크게 곤욕을 당하고 있고,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해지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인인 경우,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이어야만 보도가 가능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피해자가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언론사가 책임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 임병렬 (서울제4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 자리가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서로의 이해가 상충되는 자리로 현직에 계신 분들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기준을 제시해주면 일하기 편하겠다'라는 심정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수학적공식에 대입해서 결론을 내듯이 규율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상식과 규범, 법률들이 기준이 돼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느냐 안하느냐를 판단해나가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이런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입장에서 '그냥 평범한 사진 가지고 왜 시비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사진에 찍힌 상대방이었다면 어떠했을까'라고 한 번 더 생각해본다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